의 안 번 호		제792호		
의	결	2024.	• •	
연 월	일	(제	회)	

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현문 의원 등 7인		
발의연월일	2024년 11월 15일		

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현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2 발의연월일: 2024년 11월 15일

발 의 자: 김현문, 이상식, 박지헌, 이동우,

유재목, 김정일, 박재주

1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는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-유학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

O 이에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 등 충북형 K-유학생 제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O 외국인 유학생 관련 도지사의 책무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 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-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계획 수립, 지원 사업, 유치 확대 등에 관해 규정함(안 제5조 ~ 안 제7조)
- O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(안 제8조 및 안 제9조)

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O 관계 법 령 : 붙임

O 비 용 추 계 : 붙임

O 협 의 :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

○ 조례안 예고 : 예고 대상(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 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외국인 유학생"이란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고 충청북도(이하 "도" 라 한다)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 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.
 - 가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
 - 나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
 - 2. "어학연수생"이란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해 도내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를 공부하는 학생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(이하 "외국인 유학생등"이라 한다)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지원 대상)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
- 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
 - 2.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
 - 3. 외국인 유학생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- 4.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
 - 5. 외국인 유학생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, 나이, 국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다음해 지원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원 사업)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
 - 2.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

- 3. 생활 · 법률 상담
- 4. 취업·창업 연계 및 상담
- 5.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
- 6.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 · 문화 교육 및 행사
- 7.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
- 8. 안전, 인권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
- 9.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및 대학,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
- 제7조(유치 확대)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도 유학 상품 개발・홍보 및 설명회 개최
 - 2.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
 - 3.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8조(업무의 위탁 등)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, 법인·단체, 대학 등에 위탁할 수있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 · 감독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, 기업체,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재한외국인"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- 2. "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"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결혼이민자"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)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하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 - 2.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,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
 - 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 - 4.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 -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.
-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 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,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・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 민자에 대한 국어교육, 대한민국의 제도·문화에 대한 교육,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,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23.>
 -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31.>

- 제13조(영주권자의 처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(이하 "영주권자"라 한다)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,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·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.
 -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.
- 제18조(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 국인이 서로의 역사·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, 홍보,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.

□ 고등교육법 시행령

제29조(입학 • 편입학 등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제2호·제3호·제8호·제9호·제11호·제12호·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. <개정 2000. 11. 28., 2001. 1. 29., 2001. 12. 31., 2002. 5. 27., 2005. 3. 25., 2006. 1. 13., 2007. 1. 24., 2008. 2. 14., 2008. 6. 5., 2008. 9. 18., 2009. 10. 7., 2010. 6. 29., 2010. 9. 1., 2011. 10. 17., 2013. 3. 23., 2014. 2. 11., 2014. 4. 29., 2015. 11. 30., 2016. 8. 29., 2016. 10. 25., 2017. 1. 17., 2018. 10. 16., 2022. 2. 28., 2023. 4. 18., 2024. 2. 20.>
- 1. ~ 5. (생략)
- 6.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- 7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
 - 가. 재외국민
 - 나. 외국인
 - 다. 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
- 8. ~ 16. (생략)
- ③ ~ ⑦ (생 략)

□ 출입국관리법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2. 10., 2014. 3. 18., 2018. 3. 20., 2020. 6. 9., 2021. 8. 17.>
 - 1. "국민"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.
 - 2. "외국인"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- 제10조(체류자격)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.
 - 1. 일반체류자격: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
 - 2. 영주자격: 대한민국에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[전문개정 2018. 3. 20.]
 - 제10조의2(일반체류자격)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(이하 "일반체류자격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- 1. 단기체류자격: 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 간(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
 - 2. 장기체류자격: 유학, 연수, 투자, 주재,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
 -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,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, 취업활동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3. 20.]

- 제17조(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)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.
 -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5. 14.]

- 제18조(외국인 고용의 제한)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 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 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[전문개정 2010, 5, 14.]

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

2. 비용 발생 요인

- O K-유학생 유치 충북 유학박람회 개최
- O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
- O 외국인 유학생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
- O K-유학생 홍보 및 국외여비

3. 관련조문

O 안 제6조(지원 사업)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 - 추계 기간: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으로 함
 - 재정수반요인 : 외국인 유학생 등의 국내 유학 지원에 관한 소요예산 ※ 2024년 예산액 및 2025년 당초예산 요구액 기준 작성

(기추진 4개 사업)

- 나. 추 계 결 과 : 1,050백만원(도비 100%)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 비
 - ※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계
세 출	341,000	231,000	239,000	239,000	1,050,000
유학박람회	140,000	140,000	140,000	140,000	560,000
취업박람회	20,000	30,000	30,000	30,000	110,000
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	120,000	_	8,000	8,000	136,000
홍보비 및 여비	61,000	61,000	61,000	61,000	244,000
재원 조달	341,000	231,000	239,000	239,000	1,050,000
도비	341,000	231,000	239,000	239,000	1,050,000

[※] 전체 기 추진 사업임